

보도자료

2014년 8월 28일(목) 배포 시점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의결 안건]

가. 통신시장조사과 장대호 과장(1530) 나. 방송정책기획과 양한열 과장(1410)
다. 지상파방송정책과 장봉진 과장(1420)

[보고 사항]

가. 지역방송팀과 임필교 팀장(1450)

2014년 제38차 위원회 결과

□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,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

[의결안건]

가. 「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정안에 관한 건(첨부자료 참조)

- 「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」이 시행됨(‘14.10.1.)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▲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형 및 기준 ▲ 긴급중지명령 기준 ▲ 자료제출 및 보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을 의결함

나. 비무장지대 내 “대성동 마을” TV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

- KBS의 대성동 마을(비무장지대 內)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면제대상 지정 요청(‘14.4.23)에 따라 수신료 납부 면제 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,

- 비무장지대 내 기본권 제한 등에 따른 사회적 보상 등의 사유를 감안하여 방송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대성동 마을 주민이 소지한 수상기를 수신료 납부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함

다. 신규 라디오방송국(FM) 허가에 관한 건

- o 신규 라디오방송국(FM) 허가심사 기본계획 의결("14.7.3)에 따라 교통제주 FM방송국에 대한 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,
- 방송구역 커버리지 확대방안, 채널정체성 확립방안 및 외국어 방송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세부계획 등을 마련하여 제출토록 조건을 부과하고, 방송환경 변화에 대비한 경쟁력 제고와 해당 지역의 지역성 구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권고사항을 부과하여 허가하기로 의결함

[보고안건]

가. 「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」 제정안에 관한 사항

- o 「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」이 제정("14. 12. 4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▲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·시행 ▲지역방송발전위원회 조직 및 운영 ▲권한의 위임·위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(안)을 보고함

<첨 부>

□ 주요 내용

①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의 유형 및 기준 (안 제3조)

- 가입유형,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, 거주 지역 등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의 유형 및 기준을 규정함

② 분실·도난 단말장치의 수출방지 (안 제4조)

- 분실·도난 단말장치 확인 업무를 「방송통신발전기본법」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함

③ 긴급중지명령의 기준 등 (안 제5조)

-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환경, 이용자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법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

④ 자료제출 및 보관 (안 제6조)

- 이동통신사업자,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출고가, 장려금 등의 월별 자료를 매월 종료 후 45일 이내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

⑤ 시정명령 관련 기준 (안 제8조~제10조, 별표1)

- 시정조치의 공표방법, 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등을 규정함

⑥ 과징금 관련 기준 (안 제11조~제16조, 별표2)

-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 기준,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, 과징금의 독촉 등을 규정함

7 권한 위임 (안 제17조)

-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업무에 대한 시정명령,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함

8 과태료의 부과기준 (안 제18조, 별표3)

- 대리점, 판매점, 이동통신사업자의 임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규정함